

目 次

포커스	1
美國 金融改革法案(H.R.10)의 意味와 影響	1
國內保險動向	20
1. 經濟金融動向	20
2. 保險主要指標 動向	28
가. FY'99 1/4분기 生命保險 資產運用 分析	28
나. 自動車保險 損害率 및 事業費率 推移	35
3. 保險政策 및 制度 動向	38
가. 製造物責任(PL)法 施行에 따른 展望과 課題	38
나. 金融機關 設立認許可 指針 制定、施行	44
海外保險動向	47
1. 經營一般	47
가. 美國 損保社의 '98년 事業實績 分析	47
나. 日本 損保社의 '98년 事業實績 分析	50
다. 캐나다의 脫相互會社에 관한 規程	54
2. 商品	59
가. 日本, 自動車保險 관련 新商品	59
나. 日本, 個人變額年金保險 관련 新商品	63
다. Reliance National, 企業體收益補償保險 개발	68
3. 마케팅	70
가. 顧客中心經營	70
나. 不良物件 대상 自動車保險 : Progressive社의 成功사례	76
4. 主要國의 保險政策 : 호주	80
海外保險論文紹介	90
新着圖書目錄	94

美國 金融改革法案(H.R.10)의 意味와 影響*

미국에서는 金融改革法案의 입법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하원을 통과한 상태임. 최종 입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동 법안의 통과여부를 떠나 미국의 금융산업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金融産業間 競爭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 序論

□ 金融制度改革은 세계적인 추세임.

- 英國에서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이 제정되어 주식매매위탁 수수료의 완전자유화 등 주식거래에 관한 대변혁이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도 금융업무의 機能的, 橫斷面的인 規制監督體制의 정비·개정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
- 日本에서는 1998년 6월에 금융시스템개혁관련법안이 성립하여 지주회사 등을 통하여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음.

□ 선진국에서의 이와 같은 금융개혁은 세계금융시장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金融統合化에 기인함.

- 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동산채권이나 自然災害리스크의 증권화와 같이 과거 은행·증권·보험의 틀을 넘는 混合的인 商品이 등장하였으며, 또한 Travelers Group과 Citicorp의 통합 사례(1998월 4월 6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異種金融機關間의 대형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이종금융기관간 지주회사의 합병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겸업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 朴重泳 先任研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

화가 실현되면, 종적인 규제감독체제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美國에서도 은행·증권·보험의 장벽을 철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美國의 金融制度는 대공황의 반성으로부터 은행의 비은행업무를 금지한 1933년 銀行法(Banking Act of 1933, 통칭 Glass-Steagall법)이 기조로 되어 있지만, 최근 매년 金融制度改革法案이 제출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제도개혁법안은 각 업계의 이해대립으로 아직 立法化에 이르지 못했지만, 1999년 7월 1일에 下院을 통과한 상태임.
-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金融環境의 變化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에 本考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제도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쟁점사항, 동법안의 향후 전망 및 영향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함.

2. 金融改革法案의 推進 狀況

- 미국은 '30년대 大恐慌期에 주가 폭락으로 주식투자에 주력해 온 은행의 도산이 급증하면서 금융혼란을 겪자 신용제도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Glass-Steagall법*을 제정하였음.

* 미국 대공황기의 금융혼란방지를 위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 업무영역 구분, 要求拂預金 附利禁止, 예금보험기구(FDIC)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80년대 이후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거나 법률해석상 모호한 틈새를 이용하여 銀行持株會社 등이 증권업무에 적극

진출하면서 Glass-Steagall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됨.

- '90년대 들어 Glass-Steagall법 폐지를 포함하여 金融機關間 兼業化 및 監督 體系改編을 둘러싸고 은행법 개정논의가 가속화되었으나 입법에는 실패함.
 - o 1991년 Bush 행정부는 금융기관간 겸업허용, 연방감독기관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민주당과 증권업계의 반발로 실패함.
 - o 1995년 초에는 상·하원 은행위원장이 각각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1996년 6월에는 Jim Leach 하원 은행위원장의 「金融서비스競爭力法案(Financial Services Competitiveness Act)」*이 하원 은행위원회 및 상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됨.
 - * 예금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정성 유지를 도모하고 은행·증권·보험회사간 겸업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일명 H.R.10이라 함.
- 1997년 들어 Leach(하원 은행위원장, 공화당)안, Roukeman(하원의원, 공화당)안, D'Amato(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공화당)안 등 3개의 금융개혁법안이 제출되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됨.
- 1999년 들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上·下院에서 각 법안이 통과됨.
 - o 上院은 Phil Gramm 상원 은행위원장 주도로 입법된 「金融서비스現代化法案(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을 의결(1999.5.6)하였음.
 - o 下院은 Leach의원의 「金融서비스法案(Financial Services Act)」과 John LaFalce의원의 「金融現代化法案(Financial Modernization Act)」을 기초로 양당 합의안을 마련하여 '99년 7월 1일 의결하였음¹⁾.

1) 미 하원은 이와 함께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안도 금융정책법안의 부속법안형태로 통과시켰음. 특히, 소비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보장카드번호, 금융 및 신용카드거래내역 등을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음.

3. 金融改革法案의 概要

- Glass-Steagall법과 은행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 방식으로 은행 · 증권 · 보험의 상호참여를 인정하는 H.R.10의 가장 주된 목적은 競争促進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革新性和 效率性を 강화하는 것임.
 - 이 법안은 은행 · 증권 · 보험의 상호참여를 인정하는 것 외에 都賣金融機關(Wholesale Financial Institutions)의 설립을 인정하고, 상호회사가 주식회사화를 목적으로 本店 所在州를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金融機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음.
 -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소비자보호, 경쟁의 공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규제감독방법에 관한 많은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하원안을 기초로 H.R.10의 내용을 競争促進 및 規制監督의 政策方向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²⁾.

가. 競争促進에 관한 事項

1) 銀行 · 證券 · 保險의 相互參與

- 은행 · 증권 · 보험회사의 상호진출이 持株會社方式으로 인정되고, 자회사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각 금융기관이 증권의 인수나 거래, 보험의 인수, 기업금융 등의 기본업무를 지주회사의 증권자회사 · 보험자회사에서 영위하는 것이 인정됨.

2) H.R.10의 내용은 제안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입법 진행과정 중에 수 많은 수정사항이 있어 본고에서 이들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취급할 수 없으므로 초기의 Jim Leach안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만 언급하고자 함.

- o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에서 보면 손회사)에는 타사의 금융서비스를 판매하는 것(agent업무)만 인정됨.
- o 銀行本體에서의 보험업무는 인수·판매도 금지되었지만, 현재 既營爲 되고 있는 보험업무에는 기득권이 주어짐.
- 금융기관의 지주회사가 은행·증권·보험의 각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自己資本比率 등의 일정자격을 갖추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 자격요건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가된 금융업무를 정지해야 함.
- o 그러나, 이 자격을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FRB의 事前承認을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2) 一般會社の 貯蓄金融機關을 통한 金融業務

-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일반사업을 할 수는 없음.
- o 처음에는 일정한 수입제한 조건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일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하원 심의 중에 삭제되었음.
- 저축금융기관은 은행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
- o 현재, 單一貯蓄金融機關 持株會社(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 UTHC)는 일반사업을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H.R.10에서는 기존의 UTHC가 하는 일반사업에 기득권이 주어졌음.
- o 이 규정은 은행이 일반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한편, 일반회사가 기존의 UTHC를 매수함으로써 금융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3) 都賣金融機關

- ☐ 企業去來에 특화한 도매금융기관(WFI)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 설립을 인정하고 있음.
 - o WFI는 본점·자회사·지주회사방식을 막론하고, 소매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預金保險制度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이 규정은 消費者保護의 觀點에서 예금보험의 대상인 소매상품과 기업에 대한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거래에 대하여는 예금보험료의 부담을 면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4) 相互保險會社の 株式會社化를 위한 本店의 移轉 許可

- ☐ 상호회사가 주식회사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주로 본점의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인정함.
 - o 미국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실적배당형의 變額保險商品의 발전으로 생명보험회사간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등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음.
 - o 이 때문에 많은 상호보험회사는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業務多角化나 자금조달 면에서 우위성이 있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州에 따라서는 상호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음.

나. 規制監督의 政策方向에 관한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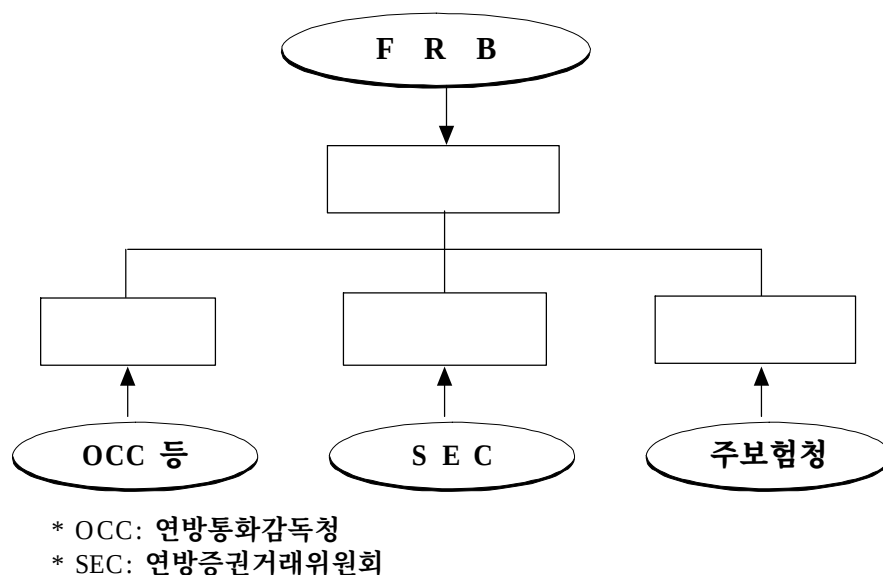
1) 規制監督體制

- ☐ 은행·증권·보험의 기능별 규제감독은 과거 규제감독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과거 은행지주회사의 규제감독을 하고 있던 FRB는 계속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包括的 監督體制의 상부기구로서 기능하도록 규정하였음([그림 1] 참조).

- 聯邦 FRB와 각 기능별 감독기관은 검사 등의 시기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포괄적 규제감독과 기능별 규제감독의 제후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經營健全性이 확보되도록 의도하고 있음.

[그림 1] H.R.10에 의한 규제감독체계



- 동 법안은 FRB와 각 기능별 규제감독기관의 규제감독 우선권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 FRB는 金融持株會社 그룹 전체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증권·보험의 각 자회사에 대하여 규제감독을 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FRB 규제감독의 내용에 관하여 각 기능별 규제감독기관이 중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별 규제감독기관의 방침이 우선함.

2) 향후 開發되는 商品의 定義

- H.R.10은 金融持株會社에 폭넓은 金融業務를 인정하였지만, 금융업무와 일반사업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또한, 은행·증권·보험이라고 하는 각각의 금융업무도 金融持株會社의 산하에 있는 각각의 자회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때문에 동 법안은 기존의 金融商品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되는 신상품에 대하여도 금융상품의 여부를 결정하며, 은행·증권·보험회사 중 어느 기관에서 취급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음.
- 金融商品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FRB가 하며, 증권상품인가 아닌가에 관한 판단은 SEC가 함.
- 보험상품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各州의 州保險廳이 하지만, OCC가 해당 상품을 은행상품이라고 인가하여 주보험청과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稅法上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최종적인 결정은 聯邦司法機關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결정의 여지는 있음.

3) 聯邦法과 州法の 關係

- H.R.10은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에 관하여 은행이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沮害 또는 妨害」하는 주법이 존재하는 경우도 연방법인 H.R.10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저해 또는 방해」라는 표현은 Barnett은행과 Florida주 보험청과의

재판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재판은 인구 5,000명 이하의 소도시에 존재하는 국법은행이 수행하는 보험업무를 「저해 또는 방해」하는 주보험법에 대하여 연방법인 국법은행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4) 全美登錄募集人協會(NARAB)의 設立

□ H.R.10은 保險募集에 관한 면허교부, 교육·훈련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민간조직으로서 전미등록모집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gents and Brokers: NARAB)을 설립하도록 하였음.

○ 동 법안은 각 주에서 입법 후 3년 이내에 면허교부 등에 관한 統一的인 立法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입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NARAB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5) 消費者保護

□ 동 법안은 규제감독체제에 의해 金融持株會社와 각 자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자격요건으로서 산하의 예금금융기관 모두 地域社會再投資法(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의 요건에 맞는 저리의 융자를 하여야 하고, 기본이 되는 은행업무에서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은행이 다른 금융업무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은행이 여성, 소수민족, 중소기업 등 지역사회에 융자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임.

○ CRA의 문제는 인종 등에 의한 差別問題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미국

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것임.

- 또한, 동 법안은 OCC 등의 은행 규제감독기관이 은행의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에 관한 消費者保護 規則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金融改革法案의 主要爭點 및 各 機關의 立場

- 金融制度改革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는 몇가지 特徵이 있음.
 - o 은행의 증권업무는 실제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계와 증권업계의 대립은 이전만큼 중요시되지 않고 있으며, 금번에는 銀行 業界와 保險業界의 대립이 중심문제가 되었음.
 - o 은행의 지주회사방식을 이용한 보험업무진출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으며, 은행을 판매채널로서 유망시하는 보험회사는 은행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실정임.
 - o Travelers Group과 Citicorp의 지주회사간 합병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시장의 움직임이 金融制度에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 H.R.10의 내용은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법안내용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지만, 본 장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銀行의 保險業進出 및 規制監督體系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며, 동 법안에 관계된 각 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자 함³⁾.

3)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각 기관의 입장은 앞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입법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들의 입장도 이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함.

가. 各 機關의 基本的인 立場

- 현재까지의 논의는 保險業務의 擴大로 다각화를 시도하는 은행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보험업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립의 구도였음.
- o 시장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은행에 자회사를 통한 보험인수 및 판매를 인정하면, 보험회사·보험대리점·브로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보험업계는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

<표 1> H.R.10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구 분	하원안에 대한 기본적 입장	진입형태	규제감독체제	비 고
법안내용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을 지주회사에 한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포괄적·기 능별 감독의 병행	
보험회사	○	○	○	
보험대리점	△	○	○	연방법과 주법과의 관계에는 반대
은행	×	×	×	대형은행은 법안을 지지
F R B	○	○	○	
재무성	×	×	×	
N A I C	△	○	○	연방법과 주법과의 관계, 상호회사의 이전, NARAB의 설립에 반대

주: 1) ○는 찬성, ×는 반대, △는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

2) NAIC: 全美保險監督官協議會

3)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협회

- 그러나, 은행은 소도시나 은행지주회사라고 하는 법적인 허점을 활용하여 보험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規制監督機關인 OCC도 은행의 부수업무라고 생각하는 보험업무에 대한 감독을 서서히 확대하여 왔음.

-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험업계의 방침에도 변화가 일어나,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판단하에 銀行의 參與를 인정하는 대신 보험업계에 가능한한 유리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이런 결과, H.R.10의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보완되었음.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단체는 대체적으로 이 법안의 공평성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은행업계는 은행업계에 불리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⁴⁾.
- 국법은행의 규제감독기관인 OCC를 소관하는 財務部는 동 법안이 은행업계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은행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소관범위 내에서 州保險廳이나 SEC가 규제감독하는 것에 관하여도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 FRB는 동 법안을 거의 전면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參與形態를 지주회사 방식에 한정하는 것에 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주보험청의 의견을 대표하는 NAIC는 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력히 반대하는 부분도 많음.
 - NAIC는 보험업무를 다른 금융업무와 구분하여 규제감독권한이 과거와 같이 주보험청에 귀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나. 參與形態에 관한 立場

4) 다만, Citicorp, Banc One, BankAmerica, National City, J.P.Morgan, NationsBank, U.S.Bancorp 등 대형은행들은 H.R.10을 지지하고 있음.

□ H.R.10은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상호진출은 持株會社方式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참여형태에 관한 쟁점은 競爭의 衡平性, 금융기관의 健全性確保와 消費者保護라는 두가지 문제에 있음.

1) 保險業界

□ 보험업계는 지주회사방식의 참여를 지지하며, 자회사방식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資金調達 측면에서의 불공평성 문제를 들고 있음.

o 소비자는 聯邦預金保險制度의 존재를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은행을 선택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補助金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험업계는 판단하고 있음.

o 따라서, 자회사방식의 경우 은행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직접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함.

□ 둘째, 規制監督 측면에서의 불공평성을 들고 있음.

o 보험회사가 은행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은행지주회사⁵⁾로서 FRB의 규제감독을 받지만,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가 되지 않아 FRB의 규제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불공평함.

□ 셋째, 보험회사의 經營健全성과 消費者保護 측면의 문제임.

5) 보험사가 직접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됨.

- 은행이 자회사방식으로 보험인수업무를 하는 경우, 경영이 부실한 은행이 보험회사의 자본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支給能力에 문제가 발생하게 됨.

2) 銀行業界

- 은행업계는 子會社方式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음.

- 보험업계와 같이 구체적인 반대이유는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자회사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지주회사방식에 한정된 것이 주요 반대이유라고 생각됨.

3) FRB

- FRB는 보험업계와 같은 이유로 H.R.10의 내용을 지지하며, 그 외에도 몇가지 주장을 하고 있음.

- 첫째, 小型銀行의 保護를 들 수 있음.

- 지주회사방식으로만 한정하면, 대형은행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형은행에서는 은행업무와 대리점업무에 특화하는 선택도 가능함.

- 둘째, 방화벽(fire-wall) 관점에서 銀行經營의 健全性確保를 들 수 있음.

- 자회사방식의 경우, 비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자회사의 經營難이 직접 모회사인 은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은행경영의 건전성이 손상된다는 것임.

□ 셋째, 연방정부의 財政負擔增大에 대한 우려임.

- 은행은 預金保險制度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방식을 인정한 경우, 현재 지주회사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해 있는 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은행의 안정성에 관한 조사 등 예금보험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국가의 비용이 증대한다고 주장함.

4) 財務部

□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持株會社方式과 子會社方式 모두 인정할 것을 주장함.

□ 첫째, 經營形態의 選擇은 각 기업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임.

- 은행이 기존의 자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형은행에 대한 차별이 됨.
-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경영형태를 선택하는 권리를 저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둘째, 은행경영의 健全性確保 문제임.

- 재무부는 은행이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의 대부분을 配當金으로서 지주회사에 지불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셋째, 자회사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함.

- H.R.10은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에 관한 안전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는 자회사방식의 경우도 지주회사방식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o 재무부는 자회사방식의 실적을 들어 자회사방식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음.

5) NAIC

- NAIC는 持株會社方式을 지지하고 있음.

- o 은행, 보험회사 각각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방식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規制監督體制에 관한 立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감독은 은행업무에 대하여는 OCC 등의 은행규제감독기관, 증권업무에 대하여는 SEC, 보험업무에 대하여는 州保險廳이 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包括的 監督體制의 상부기구로서 FRB가 기능하도록 하고 있음.

- o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금융상품을 은행·증권·보험의 어느 쪽에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정하고 있음.
- o 규제감독에 관련된 쟁점은 취급의 공평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라는 두개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

1) 保險業界

- 보험업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H.R.10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음.

- 첫째, 規制監督의 衡平性を 들고 있음.

- o 과거에는 국법은행의 보험업무에 관해서는 OCC가 규제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보험청의 규제감독을 받는 보험회사와는 취급이 달랐음.
- o 특히, 국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이 보험상품인지 혹은 은행상품인지에 대한 定義問題 등에 관해 주보험청과 OCC간에 항상 다툼이 있었음.
- o 동 법안에 의해 은행의 보험업무도 주보험청의 규제감독을 받으며, 향후 개발되는 상품의 정의에 관해서는 세법상의 취급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음.

□ 둘째, 지주회사 그룹 전체와 각 자회사의 經營健全性 확보 문제를 들고 있음.

- o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능별로 규제감독 됨에 따라 금융기관 각각의 건전성이 유지될 것임.
- o 또한, 금융지주회사 전체를 규제감독하는 FRB와 각 기능별 규제감독기관의 情報交換에 의해 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도 확보됨.

2) 銀行業界

□ 은행업계는 이 점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o 과거 국법은행 등 일부에서 保險業務擴大에 있어 항상 장벽이 된 주보험청의 규제감독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됨.

3) FRB

□ FRB가 H.R.10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업계와 거의 같음.

- o OCC의 권한이 약해진다는 재무부의 주장에 대하여 國法銀行에 대한 OCC의 현재 권한은 그대로 있으며, 포괄적 규제감독체제의 상부기구인 FRB의 권한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 OCC의 권한이 약화되지 않음.

4) 財務部

□ 재무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은행제도는 聯邦經濟政策의 근간이므로 연방의 규제감독기관인 OCC가 책임지고 규제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임.
- 증권업무, 보험업무가 한 부분이더라도 국법은행에 대해 SEC나 주보험청이 규제감독하는 것은 OCC의 권한을 약하게 하는 것임.

5) NAIC

□ NAIC는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OCC에 의해 지금까지 행하여져 온 은행의 보험업무 규제완화는 보험업계의 규제감독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봄.
- 또한, 보험업무의 규제감독은 각 주가 하고 있고, 연방의 비용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도 우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원에서 제안된 聯邦의 保險監督機關 설립구상도 부정하고 있음.

5. 金融改革法案의 向後 展望 및 影響

□ '99년 7월 1일에 통과된 하원안은 上·下院 合同委員會(House-Senate Conference Committee)에서 금년 5월에 통과된 상원안과 절충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시될 예정임.

- 진입장벽 철폐 이후, 金融機關의 監督權限과 관련한 재무부와 FRB의 이해관계 대립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FRB가 지지하는 Jim Leach의원이 제시한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도 우려됨.

-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동 법안의 통과여부를 떠나 미국의 金融産業改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음.
 - 현재에는 모든 금융업계가 금융서비스를 統合・提供(integrated firms)함으로써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Glass-Steagall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접근됨⁶⁾.
- 이에 따라 金融産業에 미치는 影響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⁷⁾.
 - 미국의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을 인수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투자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Citicorp과 Travelers의 합병사례에서와 같이 금융산업간의 超大型 合併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은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업종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월마트와 같은 他業種의 대형사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현재 州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保險監督、規制體제도 급속히 해체될 것으로 전망됨.
 - 金融産業의 兼業化가 진행될수록 회사의 財務構造나 安全性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6) '98년 Travelers와 합병한 시티그룹은 Glass-Steagall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Travelers의 보험인수사업 부문을 포기하든지 런던으로 본점을 옮겨야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합병 전에는 Glass-Steagall법의 유지를 지지하였으나, 합병후에는 입장을 바꿔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함.

7) [http:// www.newsre.com/](http://www.newsre.com/) (1999년 7월 12일).

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生産

내수 및 수출신장 등으로 생산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어 '99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9.8% 증가하여 '95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런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1999년 2/4분기의 실질GDP성장은 9.8%를 기록하였는데 이런 높은 성장세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의 빠른 회복과 높은 수출신장세에 힘입은 것임.
 - 반도체, 사무회계용기계, 통신기기 등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수출호조세가 지속되었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도 內需가 크게 신장되었으며 輕工業生産도 증가세로 돌아섰음.
-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6월의 製造業平均稼働率は 5월중 76.6%보다 3.2%p 증가한 79.8% 수준으로 높아짐.
- 하반기 들어서도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GDP성장률은 6.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산업생산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1/4	2/4	4	5	6
생 산	12.5	22.6	17.1	21.7	29.5
제 조 업	12.8	23.3	17.5	22.4	30.6
중 화 학	16.6	27.4	20.9	26.4	35.3
경 공 업	-0.1	9.5	5.5	8.8	14.1
제조업평균가동률	71.3	76.8	74.1	76.6	79.8

資料: 통계청

나. 消費 및 投資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역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1999년 6월 중 都小賣販賣는 자동차의 판매신장세가 지속되고, 도매업 및 소매업의 판매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內需用消費財出荷는 내구소비재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내구소비재 부문으로도 증가세가 확산되었음.
- 韓國銀行의 消費者動向調査에 의하면 향후 6개월 동안 소비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월(43.3%)에 이어 6월(54.2%)에도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3/4분기의 設備投資 實行展望實事指數(BSI)도 88로 상승하여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투자 및 소비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1/ 4	2/ 4	4	5	6
도 소 매 판 매	6.0	7.4	9.0	9.4	14.2
내 수 출 하	13.1	17.3	13.6	17.8	20.4
설 비 투 자	10.9	42.2	29.5	43.3	54.2
건축허가면적	-45.8	22.4	4.1	46.5	16.8

資料: 통계청

다. 國際收支

6월 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흑자로 2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자본수지는 IMF자금상환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출 등으로 15.3억 달러의 流出超를 기록하였음

- 1999년 6월 중 經常收支는 상품수지 흑자의 확대와 소득수지 적자의 축소에 힘입어 2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商品收支는 수출호조로 인해 5월보다 확대된 2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고 사업서비스 지급증가로 적자폭이 -2.7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5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수출은 6월중 12.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어 30%를 상회하였음.
- 상반기(1~6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84억 달러 감소한 13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하반기중에도 경상수지의 黒字基調는 이어질 전망이나 경기상승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표 3> 수출입차 및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1999. 1/ 4	5	6	1 6	7
수 출 입 차	47.2	20.2	27.3	119.4	20.9
경 상 수 지	71.8	19.9	24.6	136.2	-
상품수지	70.1	24.1	29.3	150.7	-
서비스수지	-3.3	-0.6	-2.7	-1.2	-
소득수지	-7.3	-5.7	-3.4	-23.8	-

註: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資料: 한국은행

라. 雇傭 및 賃金

실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 개선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대기업 중심으로 임금도 크게 상승하였음

- 1999년 3월 이후 개선추세를 보여온 雇傭事情이 7월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증가에 힘입어 7월중 失業率은 6.2% 수준으로 낮아져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감소하였음.
 - 新規採用은 소규모사업장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常傭職의 비중은 5월 이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50% 미만인 47.8% 수준에 머물고 있어 質的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5월중 1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총액은 1,411천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實質賃金上昇率도 9.0%로 높게 나타났음.
 - 임금상승은 500인 이상 大企業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임금내역별로는 경기상승에 힘입어 超過給與와 賞與金이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표 4> 10인이상사업체 임금수준

(단위: 천원, %)

	1998. 5	1 6	1999. 5	1 6
임 금 총 액	1,285	1,390	1,411	1,483
명목임금 상승률	1.3	0.8	9.8	6.7
실질임금 상승률	-6.3	-7.4	9.0	6.0

資料: 노동부

마. 金利

단기금리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고채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장기금리는 경기상승과 대우그룹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속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장금리는 정책적으로 단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 이후에는 長期金利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콜금리(1일물)는 3월 중순 4%대에 진입한 이후 4.8%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國庫債 및 會社債流通收益率(3년물) 등 장기금리는 7월 들어 投信社의 유동성리스크 우려 등으로 會社債買入需要가 위축된 데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9%대로 상승하였으며, 다시 8월 들어서는 회사채수익률이 10% 수준으로 두 자리대에 재진입하였음.
- 長短期 金利差(회사채유통수익률-콜금리 기준)는 6월 말의 3.1%p에서 8월에는 5%p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콜금리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에 따른 金利上昇期待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함.

<표 5> 주요시장금리 추이

(단위:%)

	1999.1	2	3	4	5	6	7	8.23
콜 금 리	6.2	5.6	5.0	4.8	4.8	4.8	4.8	4.8
CD유통 수익률	7.0	6.7	6.6	6.2	6.2	6.3	6.8	7.2
회사채유통수익률	7.9	8.6	8.6	7.6	8.3	8.1	8.6	10.3

註: 콜금리는 1일물, CD유통수익률은 91일물, 회사채유통수익률은 3년 만기
 資料: 한국은행

바. 株式市場

주가는 주식형수익증권의 호조, 기업실적개선 등으로 7월 초순까지 급등세를 보였으나, 중순 이후 국내외 금리상승 및 제반 여건 악화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주식시장은 6월 27일 1,000p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후 장기금리 상승, 대우그룹 구조조정, 위안貨 평가절하 우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對内外 不安要因의 영향으로 8월 들어서는 870p 960p대에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7월 중에도 낮은 시장금리로 인해 期待收益率이 높은 주식형금융상품으로의 資金流入規模가 전월보다 크게 증가하여 16조 3,000억원에 이르렀음.
 - 주식형 수익증권(10조 9,624억원), 뮤추얼 펀드(1조 2,974억원), 단위형 금전신탁(1조 5,821억원)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정기예금, 금전신탁(단위금전신탁 제외),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등 長期金融商品의 수탁고는 크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8월 들어서는 대우관련 채권의 수익증권 편입 문제 등으로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식시장 활성화로 기업체의 資金調達方式도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비중이 높아지고, 銀行貸出은 상환하고 있는 추세임.
- 전반적인 경기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機會費用인 금리상승 분위기, 대우그룹 구조조정 등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함.

<표 6> 주식형 금융상품 추이

(기간 중 증감, 억원)

	1999.3	4	5	6	7
주식형수익증권	20,373	61,003	53,015	70,394	109,624
뮤추얼 펀드 ¹⁾	982	9,723	2,826	7,266	12,974
단위형금전신탁 ²⁾	-	38,229	24,577	15,298	15,821
고객예탁금	13,130	35,822	-5,631	-2,032	24,102
계	34,485	144,777	74,787	90,926	162,521
정기예금	71,166	-15,837	-18,479	-16,804	-21,159
금전신탁 ³⁾	-61,786	-47,189	-38,519	-10,100	-25,702
장기공사채형	35,569	37,737	-1,133	-27,322	-48,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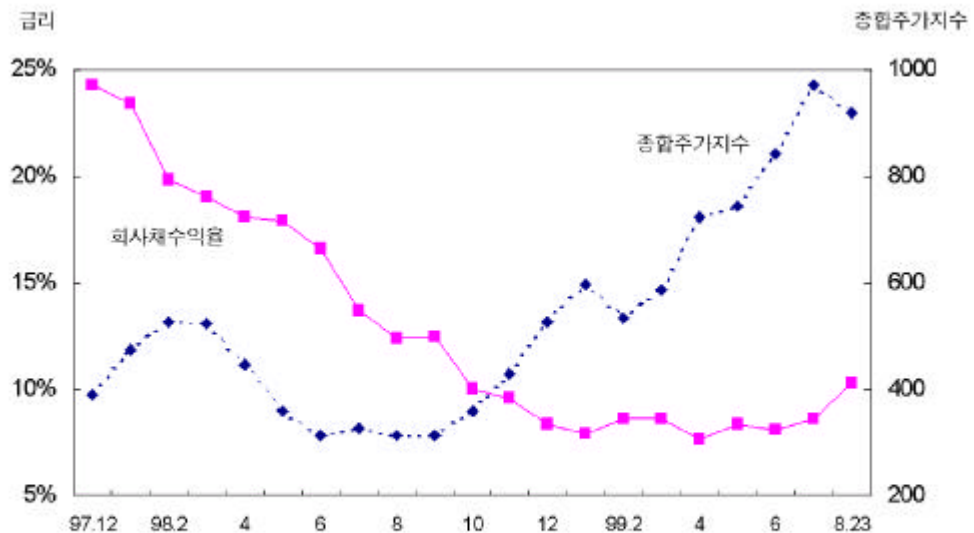
註: 1) 납입액 기준

2) 주식투자가 가능한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기준

3)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제외

資料: 한국은행

[그림 1] 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사. 換率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지속에도 불구하고, 7월 들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매매차익 역송금, 위안화평가절하 가능성 등과 같은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00원대 초반에서 변동하고 있음

- 원/ 달러 환율은 외환시장의 供給優位基調의 지속으로 6월 하순에는 1,150 원대로 하락하였으나 7월 들어서 대내외적으로 不確實性이 증대되면서 1,200원대로 상승하였으며 8월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원화가치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銀行의 對外資産充當金 確保,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賣買差益 逆送金需要, 위안화평가절하 가능성 등에 기인한 것임.
- 전반적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달러환율은 외형상으로 1,2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경제의 예상외 성장과 국제자금의 일본유입으로 엔화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수출증대와 성장촉진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표 7> 원/달러 환율 추이(기준환율)

(단위: 원, %)

	1998	1999							
	12	1	2	3	4	5	6	7	8.24
연 월 말	1,207.8 (17.2)	1,175.3 (33.8)	1,222.4 (34.2)	1,224.7 (12.6)	1,176.4 (13.8)	1,186.3 (18.9)	1,155.9 (19.8)	1,206.9 (2.4)	- -
연월평균	1,213.6 (22.3)	1,176.9 (45.0)	1,186.8 (36.8)	1,229.2 (22.5)	1,208.9 (15.1)	1,197.0 (16.5)	1,169.6 (19.5)	1,186.0 (9.7)	1,200 -

註: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절상율(+), 절하율(-)

資料: 한국은행

(이경희 연구원)

2.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FY'99 1/4分期 生命保險 資産運用 分析

1) 資産運用 포트폴리오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전년대비 3.2%p 증가한 38.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94조 1,387억원으로 FY'98 대비 2.0%p 증가함.
 - 既存社の 경우에는 2.2%p, 신설사의 경우에는 0.8%p 증가하였는데 신설사중 內國社は 2.1%p, 합작사는 2.4%p, 지방사는 -4.7%p, 외국사는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有價證券이 총자산의 38.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는 貸出債權이 35.9%, 부동산이 9.5%, 현예금 및 금전신탁 4.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가증권의 비중은 지난 '99년 3월말에 비해 3.2%p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보험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기존사와 신설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신설사중 외국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특히 國公債 및 特殊債)의 투자비중이 높아 국내사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o 대출채권의 비중은 국내사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합작사가 전체 평균보다 5%p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유가증권에의 투자비중이 높은(특히 수익증권 및 회사채) 데에 기인함.
- 1999년 4월부터 도입된 退職保險을 운용하는 特別計定資産은 전체의 1.1%이며, 기존사는 1.2%, 신설사는 0.5%임(외국사는 0%).
- FY'99 1/4분기말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자산운용율(운용자산/총자산)은 88.5%로서 FY'98 보다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o 기존사의 자산운용율은 89.1%, 신설사의 자산운용율은 85.0%로 양사간의 격차는 4.1%p로 나타나 FY'98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FY'99 1/4분기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계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소계	
현예금 및 금전신탁	4.2	8.4	7.8	6.6	23.6	8.9	4.9
유 가 증 권	38.9	31.3	41.9	30.7	43.6	34.4	38.2
대 출 채 권	36.2	38.6	30.8	38.0	10.7	34.8	35.9
부 동 산	9.8	7.7	4.8	9.5	0.4	6.9	9.5
운 용 자 산 계	89.1	86.0	85.3	84.8	78.3	85.0	88.5
비 운 용 자 산	9.7	13.7	14.0	14.3	21.7	14.5	10.4
일반계정 자산 계	98.8	99.7	99.3	99.1	100.0	99.5	98.9
특 별 계 정 자산	1.2	0.3	0.7	0.9	0.0	0.5	1.1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2) 有價證券 포트폴리오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익증권으로 이는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간접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FY'99 1/4분기말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유가증권 보유액은 총자산의 38.2%인 35조 9,950억원에 이르고 있음.
 - 商品有價證券은 총자산의 10.7%인 10조 270억원, 投資有價證券은 총자산의 27.6%인 25조 9,680억원으로 나타나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투자유가증권은 장기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으로 기존사는 30.7%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신설사는 8.9%에 불과하여 신설사는 短期賣買 목적의 상품유가증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생보사 보유 유가증권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受益證券으로 총자산의 21.3%를 점유하여 FY'98 대비 2.5%p 증가하여 지난해말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라 間接投資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
 - 수익증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債券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했고, 다음으로 株式이 5.9%를 차지하고 있음.
- 회사그룹별 특징을 살펴보면, 외국사의 운용형태가 국내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즉, 외국사의 경우 총자산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43.6%로 국내사들보다 평균 5%p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o 또한 상품유가증권의 비중은 기존사의 1/4, 국내 신설사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매우 保守的인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o 반면,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41.2%로 국내 신설사에 비해 5배 이상 높는데, 특히 국공채, 특수채와 같이 비교적 장기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FY'99 1/4분기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계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소계	
상품 유가 증권	주 식	1.8	5.4	2.3	4.5	0.9	4.2	2.2
	국공채	0.0	0.8	2.1	0.0	0.0	0.9	0.2
	특수채	0.6	1.0	1.5	0.1	1.1	0.9	0.6
	회사채	0.1	1.8	2.9	0.0	0.4	1.6	0.3
	수익증권	5.2	16.3	20.3	20.9	0.4	17.0	7.0
	해외유가증권	0.2	0.0	0.0	0.1	0.0	0.0	0.1
	기 타	0.2	0.3	0.1	2.8	0.0	0.8	0.3
	소 계	8.1	25.7	29.2	28.9	2.5	25.5	10.7
투자 유가 증권	주 식	3.8	3.8	3.0	0.5	0.5	2.7	3.7
	국공채	1.3	0.1	1.0	0.1	9.9	1.0	1.3
	특수채	4.3	0.1	2.6	0.8	23.5	2.4	4.1
	회사채	2.1	0.6	3.4	0.2	1.6	1.2	2.0
	수익증권	16.5	0.7	0.3	0.0	5.0	0.8	14.3
	해외유가증권	2.3	0.4	2.4	0.0	0.3	0.7	2.0
	기 타	0.2	0.0	0.0	0.2	0.4	0.1	0.2
	소 계	30.7	5.7	12.7	1.8	41.2	8.9	27.6
유가증권 합계		38.9	31.3	41.9	30.7	43.6	34.4	38.2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3) 貸出債權 포트폴리오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주력을 이루었던 대출채권은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유가증권 보다 그 비중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대출이 개인대출 보다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99 1/4분기 말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대출채권 보유액은 총자산의 35.9%인 33조 8,410억원에 이르고 있음.
 - 콜론을 제외한 대출채권의 규모는 33조 6,585억원이며, 個人貸出이 총대출의 46.5%, 企業貸出은 53.5%를 차지하여 기업대출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대출을 다시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 대출이 총자산의 14.2%(기업대출의 74.0%)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0%(기업대출의 26.0%)에 불과하여 대기업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그룹별로 대출채권을 살펴보면, 국내사들과 외국사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외국사들의 대출채권 비중은 총자산의 11.2%에 불과하여 국내사들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출형태별로 보면 내국사와 지방사의 경우 기업대출비중이 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외국사의 경우에는 개인대출이 기업대출의 5배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트라이프와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외국사의 경우에는 기업대출이 전무한 실정임.

<표 3>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단위 :%)

구 분	기준사	신 설 사					계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소계	
콜 론	0.1	0.4	0.1	3.0	0.4	0.9	0.2
대 출	36.1	38.6	30.8	38.1	10.8	34.8	35.9
개인대출	17.2	13.7	19.1	7.7	8.7	13.4	16.7
기업대출	18.9	24.3	11.7	27.4	1.6	20.6	19.2
대 기 업	14.3	15.0	8.1	18.4	1.5	13.2	14.2
중소기업	4.5	9.4	3.7	8.9	0.1	7.4	5.0
대출채권합계	36.1	39.0	30.9	41.1	11.2	35.7	35.9

註: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4) 資産運用收益率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율은 14.3%로 전년에 비해 2.1%p 증가한 양호한 수익율을 시현하였는데 특히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상품주식의 수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 FY'99년 1/4분기 국내 생보사들의 총자산수익율은 12.9%로 FY'98에 비해 2.7%p 증가하였으며, 運用資産收益率은 14.3%로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운용자산별 수익율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의 수익율이 증권시장의 활황에 따른 상품주식의 높은 수익율(기준사 105%, 신설사 74%)에 힘입어 19.7%의 고수익율을 시현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출채권이 13.4%의 수익율을 시현함.

□ 보험사 그룹별 운용자산수익율을 살펴보면 내국사가 1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합작사, 기존사, 지방사, 외국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내국사의 경우 유가증권의 운용수익율이 26.5%로 타 그룹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율을 나타내었고 주식투자비중이 적은 외국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율을 시현함.

<표 4> FY'99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별 수익율

(단위 : %)

구 분	기존사	신 설 사					계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소계	
현예금 및 금전신탁	6.8	9.5	6.5	5.6	7.6	8.0	7.1
유 가 증 권	19.2	26.5	19.3	23.3	12.1	22.6	19.7
상품유가증권	34.6	29.0	24.4	24.2	30.7	26.4	-
투자유가증권	16.0	16.8	7.9	9.1	11.1	11.7	-
대 출 채 권	13.7	11.1	12.9	10.3	11.1	11.3	13.4
부 동 산	2.0	1.3	1.3	1.3	0.7	1.3	1.9
운 용 자 산 계	14.3	15.2	14.9	13.3	10.6	14.4	14.3
비 운 용 자 산	0.2	0.3	0.1	0.4	0.1	0.3	0.2
총 자 산	12.9	13.1	12.8	11.5	8.3	12.4	12.9

註: 총자산에는 특별계정자산 제외
 資料: 각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양성문 선임연구원/오승철 연구원)

나. 自動車保險 損害率 및 事業費率 推移

최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격화로 손해율 및 사업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2000년 附加保險料의 자유화를 감안할 때 事業費의 效率的인 管理가 향후 가격경쟁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며, 손해율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요망됨

- 自動車保險 損害率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 그 동안 감소추이를 보이던 손해율이 FY98 1/4분기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9년 5월 현재 65.6%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營業用의 경우는 '99년 5월 현재 94.1%로 크게 증가한 실정임.

<표 1>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 97				FY 98				'99.4 5월
	1/ 4	2/ 4	3/ 4	4/ 4	1/ 4	2/ 4	3/ 4	4/ 4	
자가용	67.0	63.1	62.8	56.1	56.5	60.3	64.8	61.8	63.4
영업용	86.6	73.2	80.1	60.5	63.6	50.0	66.0	67.0	94.1
합 계	68.7	63.9	64.2	56.5	57.0	59.5	64.9	62.2	65.6

註: 기타보험과 정부보장사업 제외 실적임.

資料: 보험개발원

-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98년 8월의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즉, 보험료 인하효과와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등이 대폭적으로 현실화되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가격자유화의 확대시행으로 範圍料率의 적용 폭이 이전에 비하여 2배로 확대되고 각사의 인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나친 보험료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에 따라 車輛運行頻度가 다시 증가하고 의료비

및 수리비의 인상조짐도 손해율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시장의 위축에 따른 각사의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으로 과거 不良物件으로 인수되던 계약들이 대부분 一般物件으로 인수되는 등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손해율 악화의 한 요인임(<표 2> 참조).

□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의 비중 추이는 다음과 같음.

- FY97 1/4분기에 對人賠償Ⅱ 전체 계약 중 불량물건 계약이 8.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FY98 4/4분기에는 0.4%로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영업용의 경우는 FY97 1/4분기에 불량물건이 44.6%를 보였으나, FY98 4/4분기에는 3.4%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실적손해율이 豫定損害率을 하회하고 있으며, 각사의 인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거의 불량물건을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임.

<표 2> 자동차보험 일반·불량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FY 97				FY 98				'99.4 5월
		1/4	2/4	3/4	4/4	1/4	2/4	3/4	4/4	
자가용	일반	92.4	94.6	95.9	97.0	98.0	98.9	99.4	99.7	99.8
	불량	7.6	5.4	4.1	3.0	2.0	1.1	0.6	0.3	0.2
영업용	일반	55.4	63.1	70.4	77.5	83.2	89.1	94.2	96.6	97.6
	불량	44.6	36.9	29.6	22.5	16.8	10.9	5.8	3.4	2.4
합 계	일반	91.2	93.6	95.1	96.4	97.6	98.6	99.3	99.6	99.7
	불량	8.8	6.4	4.9	3.6	2.4	1.4	0.7	0.4	0.3

註: 대인배상Ⅱ기준으로 누적치임.

資料: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의 事業費率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

- 20%대에 머물던 사업비율이 30%를 초과하여 FY98 4/4분기에는 41.2%에 이르고 있음.
 - 이는 保險引受競争의 심화로 서비스경쟁이 강화되어 지출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2000년 4월부터 附加保險料가 자유화되기 때문에 각사간의 차별성은 부가보험료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각사가 보험료 측면에서 競争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임.

<표 3>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 97				FY 98			
	1/4	2/4	3/4	4/4	1/4	2/4	3/4	4/4
사업비율	28.8	30.1	30.5	36.7	29.0	37.5	33.1	41.2

註: 기타보험과 정부보장사업 제외 실적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호.

(박중영 선임연구원)

3. 保險政策 및 制度動向

가. 製造物責任(PL)法 施行에 따른 展望과 課題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수요에 부응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제도정비가 요구됨

- ☐ 제조물책임제도는 「無過失責任」법리를 통해 「과실책임」하에서 요구되는 입증책임의 상당부분을 경감시켜 충실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써 현재 미국, 유럽, 일본, 필리핀 등 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음.
- ☐ 국내 제조물책임법은 '82년 의원입법 형태로 처음 발의되었으나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유보된지 17년 만인 '99년 7월 13일 입법예고된 바 있음.
 - o 동 법안은 금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 기존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 전혀 다른 동법의 시행은 제품가격 상승, 訴訟濫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유발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짐.

<製造物責任法(案)의 주요 내용>

- ☐ 對象 製造物

-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動産으로 함.

□ 責任法理

- 제조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함.

□ 責任主體

- 손해배상 책임주체(제조자 등)는 원재료·부품·완성품 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수입업자로 함.
-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供給業者도 포함하도록 하였음.

□ 免責事由

-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함.

□ 法定責任期間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法施行에 따른 影響>

□ 消費者 權益強化

- o 제조물책임법 시행은 무과실책임법리의 채택에 따른 피해자 입증책임의 경감으로 결함제품에 대한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안전성 확보경비의 轉嫁로 가격상승 유발의 여지가 있음.

□ 長期的 企業競爭力 提高

- o 短期的으로는 새로운 원가부담 요인 발생, 기업경영의 불안전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o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안전의식의 확산과 제품품질 개선을 통한 社會的 厚生增進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舉收保險料 增大

- o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영향은 기업경영의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賠償自力確保를 위한 보험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o 우리나라와 責任追及의 양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동법이 시행된 '95년 전체 일반배상보험료 성장률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o 동법이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전체 일반배상보험료의 10.2%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연도의 PL보험가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년도 대비 보험료수입은 75%, 가입건수는 230%, 사고보고는 3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일본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추이

(단위: 10억엔, %)

FY	원수보험료	증가율
1991	216.4	6.9
1992	231.0	6.7
1993	236.5	2.4
1994	248.8	5.2
1995	275.8	10.9
1996	294.9	6.9

資料: FACT BOOK(1996-1997), 일본손해보험협회

<표 2> 미국 일반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생산물배상		기타		일반배상 전체보험료
	보험료	비중	보험료	비중	
1992	1,891	11.1	15,115	88.9	17,006
1993	1,859	10.5	15,893	89.5	17,752
1994	1,992	10.6	16,810	89.4	18,802
1995	1,764	9.5	16,818	90.5	18,582
1996	1,838	9.4	17,738	90.6	19,576
계	9,344	10.2	82,374	89.8	91,718

資料: FACT BOOK(1998)

□ 賠償責任危機 發生 可能性

- o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책임법리, 배상액의 고액화, 대형사고의 가능성, 위험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80년대 미국의 배상책임보험 위기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
- o 그러나 '95년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PL소송의 급증 내지 배상책임보험 위기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 責任追及의 사회적 환경이 미국과 다름에 비추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짐.

<法施行에 따른 對應方案>

□ 約款 및 料率體系 整備

- o 최근 일본의 중소기업형 단체 PL보험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 PL공제제도가 企協中央會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간 체결되는 등 보험업계의 민첩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o 그러나, 국내 책임추급실정에 부합하는 표준약관 및 생산물위험의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標準料率體制를 도입하여 계약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危險管理能力培養

- o PL대책은 단순히 PL소송대책 내지 사고 후 損害保全의 대책에 앞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우선임을 주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책임주체(제조자 등)를 지도·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양한 피해구제시스템 구축

- o PL사고로 인한 소송은 勝訴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비용부담, 기업이 미지 저하, 임직원 근로의욕 감퇴 등과 같은 간접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o 따라서 피해자 구제에 助力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의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신속한 意思決定體系 수립

- o 분쟁발생시 대응순서와 의사결정권자를 명확히 하는 등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하여 사고건수 및 1건당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經營健全性 確保

- o PL보험은 고액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부문으로 경영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여 PL보험이 고도의 사회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권순일 연구원)

나. 金融機關 設立認許可 指針 制定、施行

금융기관 인허가지침 제정으로 금융기관이 보험업, 증권, 금고, 종금, 신용카드업무에 진출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부채비율 200% 이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199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金融機關設立 等 認許可指針」은 금융산업 12개 전업종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營業 讓受度, 해산 또는 폐지, 주요점영업무 등에 적용됨.
- 변경된 지침은 일반법인이 금융업에 출자할 경우 財務健全性 기준을 적용받는 범위를 완화하였으며(출자지분 10% 이상)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의 금융기관설립 제한, 5대계열집단의 생명보험산업 참여조건 등을 명확화하였음.

<保險社 設立許可>

- 業種別 認許可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인허가과정을 豫備認許可와 認許可로 운용하기로 함.
 - o 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事前審査 및 인허가 사항의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로 인허가의 효력이 없음.
 - o 인허가는 예비인허가된 사항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법적인 효력을 가짐.
- 설립시 금융업종 공통으로 ① 資本金의 적정성, ② 出資者의 능력 및 성실성, ③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④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을 심사함.

- o 보험사 설립자본금은 현행 법령상 최소자본금규모인 300억원을 충족시켜야 함.
- o 일반법인이 보험업에 출자할 경우 自己資本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고 負債比率은 200% 이하로 규정함.
- o 금융기관이 보험업에 출자할 경우 해당업종 평균 자기자본규모 및 재무건전성비율을 충족시켜야 함.

<표 1> 금융기관의 보험업 출자 기준

은행	BIS비율 10% 이상, 평균자기자본규모 이상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평균자기자본규모 이상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총자산 생보 1조 5천억원, 손보 1조원 이상

- o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준으로
 - ・ 危險管理體制의 운영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계획,
 - ・ 保險計理人, 損害査定人 등 전문인력 확보계획,
 - ・ 내부통제 適正性, 법규준수능력,
 - ・ 건전성, 금융편의 기여도, 지역사회 지지도 항목이 신설되었음.

<保險事業者의 他事業兼營許可>

- 보험사업자가 타사업을 겸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o 固有業務와 연관성이 있을 것
 - o 보험산업 발전 및 고객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

- o 겸영으로 인한 건전경영 저해우려가 없으며,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
- o 전문인력 확보 및 고유업무와의 利益相衡防止 장치 확보

<保險社の 合併、轉換>

- 5대그룹의 부실보험사 인수·합병기준을 현행 정책의 현실화와 정부지원 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음.

<표 2> 5대그룹의 부실보험사 인수·합병 기준

부실사 인수방법	2개 부실사 인수합병만 규정 (신설사 + 2개 부실사 인수합병 포함)
지급여력기준 유예기간 부여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는 5년 이내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는 3년 이내
인수·합병 후 시장점유율 5% 초과할 경우 제한조건	5% 초과못하도록 규정 다만, 다음 요건충족시 5% 초과 가능 - 지배적 경영권을 갖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과의 합작 - 재무구조 개선약정 준수 -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인수

- 非保險金融機關이 보험사로 전환할 경우 보험회사 설립에 관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며, 보험회사가 비보험금융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회사 해산에 관한 審査基準을 준용함.

(이경희 연구원)

海外保險動向

1. 경 영 일 반

가. 美國 損害保險社の '98년 事業實積 分析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98년 실적은 수입보험료의 소폭상승, 투자 수익의 감소, 세금부담의 증대,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요인으로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1998년 미국의 損害保險産業은 전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실적이 크게 후퇴하였음.
 - 資産運用收益率은 전년대비 2.6%p 낮아진 11.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산업평균 추정치인 14%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임.
- 事業實積의 부진은 거대재해로 인한 손실, 수입보험료의 저성장, 투자수익의 약세, 세금부담의 증대와 같은 요인에 기인함.
- 巨大災害로 인한 보험금지출이 101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빈발 지역에 대해서는 料率調整이 행해지고 있음.
- 수입보험료의 성장세 둔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1998년의 1.4% 성장률은 수 년 동안 가장 낮은 기록임.
 - 특히 현재 미국 경제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경험하였던 고인플레이션 기조로 접어들었음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율(1.6%)을 조정 한 후 수입보험료의 實質成長率은 -0.2%로 나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였음.

- 投資收益의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손해보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
 - 투자수익은 채권보유로 인한 利子和 株式配當金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적 추세로 보면 양자 모두 감소세에 있음.
 - 低金利로 인해 채권수익율이 낮아졌는데, 간혹 1980년대 초반에 발행된 채권수익율의 1/2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 주식배당율은 지난 20년 동안 2/3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런 추세가 가까운 장래에 호전될 것 같지는 않음.
 - 주식배당율의 감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주식시장 호황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자본이득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배당에 관한 관심이 약화된 데 기인함. 주가상승율이 두 자리수를 유지하는 한 주식에 대한 배당압력은 줄어들 것임.
 - 감독당국도 보험사들이 주식시장에서 공격적으로 高收益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저금리와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資本利得은 전년대비 72.2%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투자수익의 감소와 주식시장의 變動性으로 인해 보험자들의 가격유연성이 극도로 제한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料率引上和 언더라이팅 기준의 강화가 예상됨.
- 合算比率은 전년대비 4.1%p 높아진 105.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훨씬 우수한 실적으로 198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과거 10년 동안 평균 합산비율은 107.8%임).

<표 1> 미국 손해보험사의 사업실적

(단위: 10억 달러, %)

	1997	1998	증감율
수 입 보 험 료	276.6	280.6	1.4
경 과 보 험 료	271.5	276.8	2.0
발 생 손 해 액	197.7	210.5	6.5
지 급 경 비	74.9	78.3	4.5
계약자배당금	4.7	4.7	0.9
보험영업손실	-5.8	-16.7	187.9
투자영업수익	41.5	39.6	-4.6
총 영 업 이 익	35.5	23.0	-35.2
자 본 이 득	10.8	18.6	72.2
법인세차감전순익	46.3	41.6	-10.2
당 기 순 이 익	36.8	30.9	-16.0
기 말 잉 여 금	308.5	333.5	8.1
합 산 비 율	101.6	105.7	4.0

- 한편, Conning & Company社에 의하면 1998년에 총 117건의 M&A가 성사되어 전년에 비해 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경희 연구원)

나. 日本 損害保險社の '98년 事業實績 分析

일본 손해보험산업의 FY'98년 실적은 경기침체의 지속과 요율인하 및 가격자유화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투자수입도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음

- FY'98년 일본의 損害保險産業은 경기침체의 長期化로 인한 수입보험료의 감소, 지급보험금의 증가와 자산운용수익의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였음.
- 상위 15개 손보사의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4.2% 감소한 6조 9,151억엔을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음(<표 2> 참조).
 - 이는 1998년 5월에 단행된 주요 보험종목(자동차, 화재, 상해)의 보험료 인하와 자유화에 의한 價格競爭,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에 기인한 것임.
 - 주력인 자동차보험은 新車販賣의 부진으로 3.3% 감소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는 前後混亂期를 제외하면 최초의 현상임.
 - 火災保險은 민간설비투자 및 住宅着工件數의 부진으로 5.8% 감소하였음.
 - 상해보험은 積立形保險의 대폭적인 감소세에 따라 6.2% 감소하였음.
- 수입보험료의 保險種目別構成은 자동차보험이 51.7%(3조 5,759억엔)로 가장 높고, 화재보험 16.2%(1조 1,172억엔), 상해보험 10.4%(7,187억엔) 순임(<표 2> 참조).
- 支給保險金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3조 6,406억엔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표 3> 참조).

- 事業費는 3.7%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영전반에 걸친 합리화、효율화、경비절감 등 각 사의 노력에 기인한 것임(<표 3> 참조).
- o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감소세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p 높아진 39.4%를 기록하였음.
- 保險營業利益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2,407억엔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17.2% 감소하여 922억엔으로 낮아졌음(<표 3> 참조).
- o 보험영업이익의 감소는 損害率과 사업비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전반적인 경영실적의 위축으로 총자산 규모도 0.9% 감소하여 30조 8,237억엔에 머물렀음.
- o 運用資産은 28조 2,969억엔으로 유가증권(53.2%)과 대출금(20.3%)의 비중이 73.5%를 차지하였음(<표 5> 참조).
- o 이자 및 배당수익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6.6% 감소하였음.
- o 資産運用收益率은 전반적인 금융환경의 악화로 전년대비 0.25%p 감소한 2.93%를 기록하였음.

<표 2>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비중(상위 15개사, FY'98)
(단위: %, %p)

	수입보험료	비중	증감율
화재	11,172	16.2	-5.8
육상、운송	2,612	3.8	-9.7
상해	7,187	10.4	-6.2
자동차	35,759	51.7	-3.3
자배책	5,539	8.0	-3.8
기타	6,881	9.9	-3.9
전체	69,151	100.0	-4.2

주: 육상、운송, 기타는 원수보험료 기준 증감율.

- 損害率は 전종목에서 상승하여 전년대비 3.9%p 높아진 57.4%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화재보험(42.3%)과 自賠償(73.6%)이 크게 높아졌음(<표 4> 참조).

<표 3> 일본 손해보험사의 사업실적

(단위: 억 엔, %, %p)

	1997	1998	증감율/ 증분
총 자산	311,174	308,237	-0.9
수입보험료	72,154	69,151	-4.2
지급보험금	35,364	36,406	2.9
사업비	28,307	27,263	-3.7
보험영업이익	2,590	2,407	-7.1
이자및배당금	9,222	8,609	-6.6
경상이익	3,762	3,711	-1.4
당기순이익	1,113	922	-17.2
손해율	53.5	57.4	3.9
사업비율	39.2	39.4	0.2

<표 4> 일본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상위 15개사, FY'98)

(단위: %, %p)

	1997	1998	증분
화재	31.1	42.3	11.2
육상·운송	61.2	63.4	2.2
상해	43.2	44.2	1.0
자동차	59.4	61.3	1.9
자배책	69.0	73.6	4.6
기타	55.9	59.8	3.9
전체	53.5	57.4	3.9

<표 5> 일본 손해보험 자산운용현황(상위 15개사)
(단위: 억엔, %, '99년 3월말 기준)

	금 액	비 중
예 금 및 적 금	14,594	4.7
콜 론	8,385	2.7
매입 금전 채권	8,497	2.8
금 전 신 탁	6,727	2.2
유 가 증 권	163,883	53.2
공 사 채	60,904	19.8
주 식	55,943	18.1
외국증권	41,086	13.3
대 출 금	62,713	20.3
토 지·건 물	18,170	5.9
기 타	25,266	8.2
운용 자산 합계	282,969	100.0

(이경희 연구원)

다. 캐나다의 脫相互會社化에 관한 規程

캐나다에서 탈상호회사화의 허용은 1992년에 소형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국제경쟁의 심화에 따라 대형사의 競爭力提高를 위해 대형사의 탈상호회사화 논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었음

- 캐나다의 脫相互會社化制度는 보험회사법이 탈상호회사화를 허용한 1992년에 시작되어 최종단계에 이르고 있음.
 - o 1993년에 통과된 규정은 오직 小型 保險會社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o 1996년 6월 캐나다 정부는 동 제도를 대형 상호보험회사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o 이에 따라 大型保險會社의 탈상호회사화를 위한 제도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탈상호회사화를 위한 규정이 1998년 8월에 제안되었음¹⁾.

<主要 原則>

- 보험계약자에 대한 公平待遇
 - o 주식회사로 전환된 보험회사는 모든 계약자의 保險給付와 擔保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유지하여야 함.
 - o 투표권이 있는 보험계약자(voting policyholders)²⁾는 상호회사에 대한 그들의 持分과 利益을 교환하는 대가로 會社의 價値를 분배받아야 하

1) 대형보험회사의 탈상호회사화를 위한 제도연구는 Task Force on the Future of the Canadian Financial Services Sector에 의해 이루어졌음.

2) 투표권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이사회를 구성원을 선출하고 탈상호회사화의 제안과 같은 모든 근본적인 변화를 승인할 책임이 있음.

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 보험계약자에게 公平하고 公正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임.

□ 效率性和 競爭力 向上

- o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보험회사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함.
- o 주식회사로의 전환과정은 너무 복잡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함.

□ 安定性 및 健全性の 維持

- o 전환보험회사는 안전성 및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함.
- o 특히, 전환보험회사는 현재 및 미래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여야 함.
- o 전환보험회사는 계속하여 OSFI(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에 의하여 감독을 받으며, 聯邦 保險會社法の 조항,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음.

<規程의 主要 內容>

□ Section 1(定義) : 동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 o 適格日 : 회사가 공식적으로 전환계획을 발표한 날 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가 정한 날
- o 適格 保險契約者
 - i) 주식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전환을 승인하기 위해 소집될 계약자
 - ii) 적격일 초기 투표권이 있는 증권의 소유자
- o 투표권이 있는 증권 : 전환회사의 계약자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계약

o 會社の 價值 : 감독관에 의해 지정된 일자 현재 會社の 純豫想價值

☐ Section 2(規程의 適用)

☐ Section 3(評價)

o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회사에 대한 推定價值 評價

o 다음 사항은 제외

-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점에 특정인이 상호회사에 기여한 자본의 가치
- 保險業法(Insurance Companies Act) 70조 또는 83조 4항의 계정하에 기재된 금액
-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소요될 비용

☐ Section 4(轉換申請)

o 주식회사로의 전환신청서 내용

- 주식회사로의 전환시 회사의 가치산출 결과 및 과정에 관한 보고서
- 전환회사가 설정한 적격일
-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통하여 계약자가 얻게될 이익의 형태, 금액, 전체 가치 등에 대한 자료
- 이익에 대한 상세한 명기 및 많은 적격 보험계약자 전환회사의 가치를 배분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들, 즉
 - i) 이익산출 근거
 - ii) 適格 保險契約者들에게 지급될 고정 또는 최소, 최대 이익금액
 - iii) 적격 보험계약자들 중에서 이익이 배분되는 근거
- 전환과 관련하여 적격 보험계약자들에게만 이익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등의 확인문구

□ Section 5(專門家의 確認)

- o 이익산출 및 적격 보험계약자들에게 회사의 가치를 배분하는데 사용될 방법들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여부 등에 관한 계리인 의견서

□ Section 6(監督官 提出資料)

- o 특별위원회 통지를 보내기 전 감독관으로부터 통지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제출
 - 전환신청서 사본
 - 계리인 확인서 등

□ Section 7(保險契約者에게 提供되는 情報)

- o 전환신청의 제조건들에 관하여 적격 보험계약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환신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특별회의에 대한 통지
 - 주식회사로의 전환시 이점 및 단점,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가지는 당위성 등

□ Section 8 9(政府의 許可)

- o 전환회사의 이사회는 적격 보험계약자들에 의한 전환신청에 대한 승인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로의 전환에 대한 허가를 경제부처 장관에 제출
- o 전환회사가 경제부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
 - 전환신청서
 - 계리인 확인서
 - 전환신청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특별회의에 대한 통지서 및 함께 보내졌던 관련 서류들
 - 보험업법 224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신청서 등
 - 이사회의 해산 및 적격 보험계약자의 승인과 관련된 서류 등

☐ Section 10(轉換申請의 撤回)

☐ Section 11(監督官에 의한 免除條項들)

- o 감독관은 적합하다고 간주될 경우 특정한 요구사항들을 면제해 줄 수 있음.

☐ Section 12 13(任員 및 從業員들의 利益 禁止)

- o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는 회사는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수수료나 기타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못함.
- o 이하의 경우는 제외
 - 정기적인 급여
 - 적격 보험계약자로서의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 o 주식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전환전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캐나다의 공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 또는 상장 후 1년 동안 전환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등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스톡옵션, 주식획득 권리 등을 제공할 수 없음.
- o 적격 보험계약자 자격을 갖는 개인에게 발행되는 주식은 예외

☐ Section 14 15(小型相互會社에 適用되는 舊轉換條項의 廢止 및 新條項의 實行)

(박중영 선임연구원)

2. 상 품

가. 日本, 自動車保險 關聯 新商品

價格・商品自由化 이후 일본의 보험시장에서는 많은 신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 데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소비자의 니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음

<安田火災, Car Owners 保險 「ONE」 發賣>

- 安田火災는 대형손보사로서는 처음으로 리스크세분형 요율을 도입한 自動車保險(Car Owners 보험 「ONE」)의 인가를 6월 29일에 취득하여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함.
 - 同社は 「리스크세분형 요율을 단지 채용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補償内容, 고객서비스의 충실화 등을 재검토하여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게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개발하였다」 라고 주장함.
 - 또한, 동 상품을 향후의 主力商品으로 하여 기존의 상품을 대체할 것임을 밝힘.
- 동 보험은 새로운 리스크 구분으로서 자동차의 使用目的을 도입함과 동시에 年齡條件도 현행의 4구분에서 6구분으로 세분화함.
 - 자동차의 사용목적은 일상용, 레저용, 통근・통학용, 업무용으로 4구분함.
 - 연령구분은 「전연령담보」, 「21세미만부담보특약」, 「24세미만부담보특약」(신설), 「27세미만부담보특약」(구분변경), 「30세미만부담보특약」, 「35세미만부담보특약」(신설)으로 6구분함.

□ 조건에 따라 保險料는 할인 또는 할증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균 4%의 할인이 발생함.

o 특히, 계약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현행의 「35세미만부담보특약」과 비교하면 약 10% 정도가 할인되고 있음.

<표 1> 현행보험료와의 보험료차이

연령조건		현행요율과의 보험료차이
현행요율 전 연 령	신요율 전 연 령	
		△2%
21세이상	21세이상	10%
	24세이상	△5%
26세이상	27세이상	10%
30세이상	30세이상	△5%
	35세이상	△10%

□ 한편, 車輛保險의 니드세분화나 임시운전자특약의 신설, 인신상해의 自動附帶와 탑승자상해의 정액·신속지급, 차량이 2대이상인 경우 인신상해 할인의 신설 등 새로운 보상내용도 강화하였음.

o 과거 차량보험은 全損의 경우도 시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지만, 고객의 니드에 맞게 「수리지불한도액」을 신설하여 시가액과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에 따라 중고차는 시가액을 넘어도 수리하여 계속 탈 수 있으며, 신차는 차량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시가액을 하회하는 수리비의 지불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음.

o 臨時運轉特約은 친구나 동료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였을 때의 사고에 대하여 연령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5%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가입할 수 있음.

- o 搭乗者傷害는 상처로 5일 이상 입·통원하는 경우 상처의 내용(부위, 증상)에 따라 일정액을 위문금으로서 신속히 지급함.

≤千代田火災, 「It's ONE de FULL」保險 發賣>

- 千代田火災는 장애인나 고령자를 위해 개량된 자동차 중 부과세가 비과세되는 복지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료의 3%를 할인하며, 상해사고로 下肢重度後遺障害를 입은 경우에 도요타의 엘카부 등 복지차량을 현물제공하는 종합상해보험 「It's ONE de FULL」을 발매하였음.
- o 「하나(ONE)의 계약으로 폭 넓은(FULL)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멋진(Wonderful) 생활을 지원한다」라는 컨셉에 기초한 독자 개발 신상품으로 同社는 企業・職域對象으로 적극적 판매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 할인대상이 되는 복지차량은 附加稅法에 따라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신체장애자용물품 및 그 수리」에 규정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임.
- o 介護타입車輛(휠체어승강수단차량 등) 및 自操타입車輛(운전보조장치부차량)
- 대상계약은 CAP, SAP, PAP, BAP에서 販賣用自動車를 제외한 모든 용도·차종이 대상임.
- o 7월 1일 이후에 보험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6월 30일 이전에 보험책임 개시된 계약에 대하여도 차량개량 등에 의해서 새롭게 대상차량이 되는 경우는 개량후의 보험료에 할인을 적용함.
- 同 保險은 업계 최초로 「福祉車輛提供特約」을 비롯하여 보상내용을 대폭 충실히 함과 동시에 저렴한 보험료를 실현한 종합상해보험 상품임.

해외보험동향

- 또한, 동 상품은 下肢의 중도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被保險者에게 운반할 수 있는 휠체어 등의 승강장치나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자동차를 現物提供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음.
- 또한, 과거 각각 계약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所得補償保險과 醫療費用保險을 특약화하여 질병과 상처를 입었을 때의 리스크(치료비용부담, 수입감소)를 1계약으로 보상가능하게 함.
- 이외에도 政府勞働者災害補償保險에 의한 보상 등을 받을 수 없는 就業外나 상처의 가능성이 높은 自宅外의 상해사고를 倍額補償하며, 特定感染症 및 熱中症(배액보상)에 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함.
- 이와 더불어 보험료도 저렴하게 구성하였음.
- 家財(住宅內生活用動産)擔保特約으로서는 최대 53% 비율의 보험료(주택종합보험 대비)로 화재·폭발·수해 등 여러 가지의 재해에 의한 가재손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건물구조의 耐火·非耐火의 2구분으로 요율을 알기 쉽게 하였음.
- 소득보상보험을 특약화하여 과거에 비하여 약 30% 저렴하게 하였으며, 의료비용보험도 특약화하여 과거에 비해 약 13% 할인하였음.

<AIU, 「New Prestige」 保險 發賣>

- 일본 AIU는 고객의 다양한 니드에 섬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험으로부터 Total Support형까지 현행의 자동차보험상품의 내용을 강화·확충하여 7월 1일부터 판매개시하였음.

- Total Support형의 자동차보험 「New Prestige」는 「변호사비용 등 담보특약」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10대 이상 소유의 단체계약도 포함)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o 또한, 被保險者の 範圍를 본인과 친족이외에 계약차량에 탑승 중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보험금액을 1사고당 300만엔에서 1명/1사고당 300만엔으로 하였음.
 - o 보험료는 현행과 같은 연간 3,000엔(단체계약은 제외)으로 하였음.
- 모든 위험에 대하여 면책 제로형의 차량보험을 신설함.
 - o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사고에 대하여 自己負擔金없이 보상하도록 상품을 설계함.
 - o 대상차종은 자가용의 보통승용차, 소형승용차, 경사륜승용차, 경사륜화물차, 소형화물차, 보통화물차(0.5톤 이하), 캠핑차량(특정용도자동차) 등 7개 차종임.
- 車輛保險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BAP(자동차보험)에도 「차대차」또는 「차대차한정A」를 계약할 수 있도록 보험의 종류를 확충하였음.
 - o 또한, PAP(자동차종합보험), BAP의 대물배상 면책금액을 늘려 자기부담금이 없는 계약도 신설하였음.
- 동사에서는 7월 1일 이후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無事故等級을 현행 16등급에서 20등급으로 확대하였음.
 - o 17등급 이상의 할인율은 현행의 16등급과 같은 60%를 일률 적용함.

(박중영 선임연구원)

나. 日本, 變額個人年金保險 關聯 新商品

일본의 생명보험시장에서는 老齡化 社會의 도래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변액개인연금보험이 활발하게 개발·판매되고 있음

<三井生命, 「M-VA」 發賣>

- 三井生命은 일본 최초로 기본연금액을 보증하는 변액개인연금보험 「M-VA」를 7월 1일부터 발매하였음.
 - o 동 상품은 老齡化 社會를 맞이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니드에 부응하여 개발한 것으로 보험료를 特別計定에 투입하여, 그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개인연금보험임.
- 운용방법은 연금개시일 전·후에 따라 다르며, 개시일 전은 보다 높은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며, 개시일 이후는 確定 年金額을 확실히 지급하기 위해 일반계정으로 관리함.
- 연금의 종류는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과 5·10·15년 확정연금의 4종류이며, 계약시에 이를 선택함.
 - o 최저 취급보험료는 50만엔이며, 불입방법은 일시불만 취급함.
- 동 상품은 기본연금액 保障型이기 때문에 기대한 운용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라도 가입시에 설정한 기본연금액은 보장됨.
 - o 据置期間(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 45년 이하이므로 생활주기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자대출도 가능함.

- 配當金の 경우 연금개시일 이전은 소정이율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립하며,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은 하지 않음.
 - o 연금개시일 전에 被保險者が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급부금을 지급함.
 - o 사망급부금은 사망일의 적립금을 지급하지만 적립금액이 소정의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망급부금(일시지불 보험료를 하회하지 않음)을 지급함.

<표 1> 상품별 조건

상품구분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	거치기간
10년보증기간부종신연금	45 80세	18 70세	10 45년
5년확정연금	45 85세	18 70세	10 45년
10년확정연금	45 80세	18 70세	10 45년
15년확정연금	45 75세	18 65세	10 45년

- 동사에서는 판매방법에 관하여는 업계공통시험 합격자인 變額保險販賣資格者を 대상으로 「M-VA」 판매를 위한 사내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사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판매자격을 줌.
 - o 또한, 판매시에 정확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판매후에도 연 2회 계약내용과 운용실적을 계약자에게 우송하는 등 情報公開의 충실화를 기함.

<스칸디아生命, 「스칸디아 投資型年金」 發賣>

- 日本 스칸디아생명은 變額個人年金保險 「스칸디아 투자형연금」을 개발하여 7월 2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 동 보험은 特別計定の 운용실적에 근거하여 노후생활자금을 효율적으로 형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료일시불의 연금상품임.
 - 각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의해 장래의 연금액이 변동되며, 연금액의 最低保障額은 없음.
 - 각 특별계정의 운용결과는 직접 적립금에 반영되고 보험료 불입방법은 일시불이며, 전액 특별계정에 투입·운영됨.
- 변액개인연금보험의 종류는 保證期間附 終身年金과 確定年金 두가지임.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은 연금지급기간이 평생인 연금으로 지급보증기간은 5 20년의 기간을 1년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됨.
 - 확정연금은 연금지급기간이 확정된 연금으로 연금지급기간은 5 20년의 기간을 1년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됨.
- 동 상품의 적립기간은 10 45년이며, 계약연령범위는 0 74세임.
 - 최저 기본보험금액은 50만엔이며, 최고 기본보험금액은 3억엔임.
 - 보험료는 일반계정에 투입되어 계약일을 포함시켜 8일째 말에 전액이 特別計定에 대체됨.
- 연금지불 개시연령은 45 85세이며, 연금지불 개시일에 적립금을 일반계

정으로 대체함.

- o 年金의 元金은 예정이율(연 1%)로 운용되어, 年金管理費用(지불연금액의 1%)를 차감한 뒤 정액연금으로 일반계정에서 지급됨.
- 연금지불 개시일 또는 거치기간부확정연금의 이행일까지의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死亡保險金이 지급됨.
 - o 보험금액은 사망일의 적립금 합계액이나, 적립금의 합계액이 기본보험금액(납입보험료의 합계)을 하회하는 경우는 기본보험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됨.
 - o 災害死亡時에는 사망보험금액에 기본보험금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됨.
- 연금지급개시전에 계약을 해약한 경우는 還給金이 지급됨.
 - o 환급금은 해약일의 적립금액이 되지만, 해약일이 계약일로부터 7년이内的인 경우는 經過年數에 따라 적립금액의 일정비율(해약공제)을 적립금액으로부터 차감한 금액이 환급금으로 됨.
 - o 解約控除率은 경과년수 1년에 7%, 이후 1년 경과시마다 1%씩 감소함.
 - o 계약자대출은 환급금의 50%내에서 몇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
- 特別計定은 그 운용방법에 따라 「세계주식A Hedge」, 「세계주식A」, 「세계 Balance A」, 「세계채권A Hedge」, 「세계채권A」, 「일본주식·성장주」 등 6가지로 구분됨.

(박중영 선임연구원)

다. Reliance National, 企業體收益補償保險 開發

『기업체수익보상보험』은 상장사가 목표수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기업은 동 상품을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직면하는 다양한 금융위험과 영업위험을 헤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의 다국적 보험회사인 Reliance National社は 上場企業이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기업체수익보상보험(Enterprise Earnings Protection Insurance : EEPI)상품을 개발하였음.
 - EEPI는 上場社 株主와 최고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손해보험과 전통적으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았던 金融危險 및 營業危險을 결합한 상품임.
- 동 상품에서는 기업체의 수익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들을 담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감소
 - 原材料의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 공급구조 및 유통망 장애
 - 날씨 관련 사고
 - 자연재해 및 人災
 - 기타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統制不能의 사건
-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가 約款에서 담보하는 손실로 인해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事前에 결정된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기업체의 목표수익 미달액을 보상함.
 - 이를 통해 기업체의 收益變動性을 감소시킴으로써 株主價值를 증대시

키고, 기업체의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킴.

- EEPI는 특정한 금융위험과 영업위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巨大損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완장치 기능을 수행함.
 - 동 보험에서 금융위험 및 영업위험이 부보되는 이유는 이들이 손해보험의 위험과 광범위한 측면에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임.
- EEPI 상품은 언더라이팅 이전에 대상 기업체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함.
 - 이를 위해 Reliance National社は 경영분석에 관한 소프트웨어、기획、컨설팅 분야의 선두주자인 Strohl Systems Group과 제휴하였음.
 - 기업체의 전반적인 위험은 Strohl Systems에 의해 측정되며, Reliance National社は 잠재적 고객의 정확한 위험측정을 위해 면밀한 금융 관련 분석을 수행함.
 - 아울러 Strohl Systems는 EEPI 가입자에게 損失確率을 감소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함.
- Reliance National社は 높은 담보력을 확보하고, 기업체수익보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資本市場構造를 구축하기 위해 Swiss Re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체결하였음.
- EEPI는 claims-made(배상청구기준)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현재 당면한 위험뿐만 아니라 潜在的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헤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경희 연구원)

3. 마 케 팅

가. 顧客中心經營(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미국의 보험산업에서 고객중심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한 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것임

<顧客中心經營의 定義>

- 최근 미국에서는 통신산업, 은행의 小賣部門, 카드산업 등에서 고객중심경영(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이 주목받고 있으며 보험산업에서도 이를 도입하고 있음.
 - CRM이란 보험사업의 모든 측면 즉, 마케팅과 商品開發에서부터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임.
- CRM은 기존의 供給者中心의 전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고객의 행동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에서 출발하여 고객에 대한 완전한 이해(고객의 구매행태, 인구학적 정보, 회사에 대한 수익성 등)를 하고, 그 결과를 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함.
 -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사는 전체적인 고객의 트렌드 및 개별 고객의 特性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CRM의 특성은 顧客中心, 價值中心, 복수판매채널(multi-channel), 정보중심, 全社的 接近으로 집약될 수 있음.

<CRM의 중요성>

- CRM이란 고객의 니즈를 事前에 파악하여 이들이 他社로 계약을 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있는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o 보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CRM을 통해 고객의 忠誠度를 높임으로써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o 신규로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CRM을 통해 기존고객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함.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규고객 획득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기존고객의 유지비용보다 5 ~ 10배 높다고 함.
 - o 신규고객은 금융서비스에 대해 매우 민첩하게 반응하므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사로 이전하게 됨.

<CRM의 실행>

- CRM의 핵심은 고객의 개념을 보험계약자가 구매한 상품 위주에서 탈피하여 보험사가 각 개인에 대해 알고 있는 개별적인 顧客情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 o 과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개인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保險種目別로 고객관리를 구분하여 해왔음.
 - o 예를 들어, 어느 한 개인이 현재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이전 회사에서 구입한 고용주 지원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 대한 기록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음.
 - o 더 나아가 동일한 고객에 대한 정보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있어, 고객 정보가 分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런 현상은 상품중심으로

정보를 구축하는 보험사에게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임.

- CRM의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험사들이 고객에 대해 갖고 있던 무수한 데이터(건강상태, 라이프 스타일, 보험수익자에 관련한 정보 등)를 고객에 대한 이해(knowledge)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
 - 둘째, 보험회사가 수집해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
 - 셋째, 필요한 정보에 접근
 - 넷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
- CRM에의 접근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관계없이 고객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상품의 구별에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인 경계를 없애는 것임.
 - 고객에 대한 정보의 집적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객과의 대화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고객의 프로필을 완성하게 됨.
 - 보험사는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갖게 되므로 고객이 회사의 어느 누구와 접촉하더라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일한 응답을 얻게 됨.
- 종합적인 고객 프로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
 - Customer Relationship - 고객이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 포함)에 갖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
 - 고객의 行態 - 거래관계에서 나타난 고객의 특성은 무엇인가?
 - 고객의 인구학적 특성 - 인구적·심리적, 기타 마케팅 관련 특성은 무엇인가?
 - 가구 구성원 특성 - 가구 구성원 중 누가 즉각적으로 고객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가?

- o 고객리스크 - 고객이 갖고 있는 리스크의 수준은 어떠한가?
- o 판매채널의 선호도 - 고객이 선호하는 판매채널은 무엇인가?
- o 購買性向 - 다음에 구매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 o 顧客收益性 - 회사에 대한 고객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가?
- o 가계의 이벤트 - 가구원의 생활에 큰 변화(대학진학을 위한 이사, 주택 구매, 퇴직 등)가 예상되는가?
- o 고객만족도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CRM의 期待效果>

- ☐ CRM은 價值測定, 顧客分割, 서비스 전달모델, 일대일 차원에서의 마케팅과 같은 發展戰略을 수립하는 데 고객에 관한 프로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 고객중심의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보험사는 고객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에 적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CRM은 회사의 費用效果性 제고에 기여함.
 - o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低費用의 판매채널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가격민감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高品位의 서비스를 제공함.
- ☐ CRM은 고품격의 보험서비스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人口變化의 문제, 선호에 대한 접근, 라이프 스타일, 구매행태 등에 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음.
- ☐ 미국에서 향후 CRM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o CSC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금융서비스에 CRM을 도입한 비율은 20% 미만이지만, 향후 급격히 성숙되어 200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USAA Life의 성공사례>

- USAA Life는 USAA(United Service Automobile Association)의 子會社로 CRM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성공한 대표적 보험사임.
 - o USAA Life는 틈새시장(군인과 그 부양가족)을 공략하고 있음.
 - o 전통적으로 USAA Life는 고객서비스 부문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누려 왔으며 다른 선진보험사들도 벤치마킹 하였음.
- USAA社도 1990년대 들어 경쟁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고객요구의 증대 등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음.
 - o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USAA Life는 회사가 고객에게 고품격의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음.
 - o 이 시스템은 고객서비스대표부(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가 고객의 니즈를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USAA社의 CRM에 의한 회사의 목표는 판매가 아니라 고객과의 평생관계를 지속하는 것임. 고객에 대한 順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o 예를 들어, 고객이 受益者 變更을 신청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CRM 시행 이전에는 절차에 의해 수익자 변경으로 그쳤음.
 - o 그러나 CRM 시행 후에는 수익자 변경 件을 가계의 큰 변화로 간주하고, 일상적인 변화들 속에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의 擔保가 여전히 정확한지 검토하게 됨.

- 1990년에 HAL(Health, Annuity and Life)시스템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연금, 변액상품, 건강상품 등 독립적으로 관리되던 상품위주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고객위주의 조직으로 변경한 것임.
 - o 아울러 콜센타(Call Center)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보험상품과 연금상품을 취급하도록 하였음.
 - o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의 多樣性和 柔軟性を 제고하고 신상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o HAL시스템 하에서는 신상품이 과거의 月刊 단위에서 週刊 단위로 공급되었으며 신상품 출시 후 나머지 시간은 상품테스트 및 관리에 투입됨.
- CRM 시행 후 교육훈련 및 콜센타의 고충처리 방식도 변화하였음.
 - o 과거에는 전체 인원 중 2/3가 컴퓨터시스템 훈련을 받았으나, CRM 시행 후에는 2/3가 顧客關係에 관한 연구에 투입되고 1/3 이하만이 시스템 작동에 투입됨.
 - o 콜센타에서는 고충접수 후 재발방지 방안을 연구하며 고객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피드백을 실시함.
- USAA Life社의 고객만족도는 CRM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나타나고 있음.
 - o 내부고객조사에 의하면 98%의 고객이 만족도 수준 최상위 20%와 차상위 20%에 속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8%의 고객이 계약을 갱신하였음.
 - o A.M.Best社에 의하면 최고 5위 생보사 중 USAA Life社가 가장 낮은 5년 평균해약율을 기록하였음(업계 평균 8% / USAA Life社 1.8%).

(이경희 연구원)

나. 不良物件 대상 自動車保險 : Progressive Insurance社의 성공사례

가격자유화로 인해 보험사의 특화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위험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할 수만 있다면 위험도가 아주 높은 불량물건 대상의 사업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不良物件特化市場의 收益性>

- 보험가격자유화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通信販賣가 일반화되면 리스크가 높은 집단의 처리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임.
 - o 일반적으로 젊은층, 老齡者, 과거 중대사고 경험자의 보험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 o 그러나 보험사들은 독자적인 特化戰略을 구사하도록 시장으로부터 요구받을 것임.
- 모든 위험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산정할 수만 있다면 高危險 고객에 특화하는 보험사의 성장도 가능할 것임.
 - o 이미 미국에서는 불량물건(non-standard)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에 특화한 보험사(Progressive社)가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음.

<Progressive社 概要>

- Progressive Insurance社는 1937년에 설립된 자동차전문 보험회사로 지속적인 革新과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全美 5위의 보험사로 성장하였음.
 - o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레크리에이션용 차량

보험, 영업용 차량보험, 보우트 보험 등임.

- 業界에서는 위험이 너무 높고 아이디어가 급진적이어서 Progressive社의 성공을 의심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高危險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순조로운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음.
- 수입보험료 기준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1982년 69위에서 1992년에는 36위까지 상승하였고, 1987년의 수입보험료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92년에는 141로 높아졌음.
- 1998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53억 달러(전년대비 16% 증가), 合算比率 93.1%, 종업원 15천명으로 포춘誌 선정 500대 기업에 선정되었음.

<Progressive社 成功의 要因>

- Progressive社는 他社에서 기피하는 불량물건을 주요 목표집단으로 선정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음.
- 1950년대 중반 高危險 運轉者들의 보험가입이 어려울 때, 이들의 보험가입을 허용한 이후 모든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Progressive社의 성공은 뛰어난 언더라이팅 기법, 초고속 클레임 서비스, 재치있는 광고, 경쟁력 있는 가격 등 顧客中心의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데 기인함.
- 고위험층을 목표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더라이팅 기법이 필수적인데, Progressive社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綜合分析하여 고객의 위험

도에 가장 적합한 가격수준을 산출하였음.

- o 운전자들의 危險度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性, 年齡, 職業 등 인구통계적 특성과 운전거리, 사용목적,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 과거 사고경력 등 모든 위험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행하였음.
- o Progressive社の 언더라이팅 기법은 매우 독창적인데, 신뢰할만한 지표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過去 信用狀態 파악에 주력하며 피보험자가 현재 일반물건 대상자인지 혹은 불량물건 대상자인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

□ 교통사고 발생시 經濟的費用과 고객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고속 사고처리 서비스를 제공함.

- o 고객조사를 통해 사고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보험금이 적게 지출되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음.
- o 이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社内改革을 통하여 보험금지불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보험금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해서 事故對應能力을 제고시킨 결과 상당한 이익을 기록하였음.

□ Progressive社の 클레임 서비스는 "즉각대응(Immediate Response)"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통해 사고처리에 관한 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o 사고현장에서 자동응답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사고처리 사무소에 연결, 사고처리 요원이 급파되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고처리됨.
- o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빠른 시간내에 완결함으로써 차량렌탈 및 보관비

용이 적게 소요됨.

- o 아울러, 피보험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수록 當事者間 和議가 쉽게 이루어짐.

□ Progressive社の 價格競爭力은 클레임 처리비용을 적게 지출할수록 고객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善循環過程을 통해 달성됨.

□ 투명한 情報公開도 Progressive社の 성장에 기여하였음.

- o 웹사이트와 1,800여 개의 Auto Pro 전화선을 통해 自社の 상품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상품이 있는 경우, 경쟁자의 상품에 대한 가격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

□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객이 구매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판매채널(multi-distribution)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이경희 연구원)

4. 주요국의 보험정책 : 호주

최근 호주정부는 광범위한 金融制度改革을 발표하였는데 보험산업과 관련된 監督・競争政策 및 가격, 상품, 마케팅, 지급여력 등 各種 制度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가. 最近의 變化

- 호주정부는 '97년 3월 「金融制度研究(Financial System Inquiry)」의 최종보고서권고(안)을 기초로 '97년 9월에 광범위한 금융제도개혁을 발표하였음.
 - 제도개혁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상품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화로운 감독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새로운 保險監督體系
 - 새로운 감독기관인 APRA(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부문을 감독할 것임.
 - 새로운 감독기관이 보험 및 연금 감독관이 수행한 健全성과 消費者保護 機能을 수행할 것이며, RBA(Reserve Bank of Australia),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등을 포함한 다른 감독관의 기능도 일부 수행할 것임.
 - APRA는 예금기관, 생명 및 손해보험, 연금기금과 퇴직금저축계정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認許可 및 監督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 ASIC는 市場統合과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책임이 있음.
 - ASIC는 ASC(Australian Securities Commission) 및 ISC(Insurance and

Superannuation Commission)의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금융제도내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ACCC의 기능도 수행함.

□ 所有權 規則(Ownership Rules)

- o 보험회사를 포함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부문 회사들은 특정 개인 및 그 관계인에 의해 15%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재무성 출납국장(Treasurer)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높은 지분율은 國益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함.
- o 다른 經濟部門과 같이 금융부문에서의 인수·합병은 TP ACT(Trade Practices ACT 1974)와 외국투자정책 및 법률하의 ACCC에 의한 경쟁규정의 지배를 받음.

나. 監督機關

1)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 ISC는 보험 및 연금산업의 금융감독기관으로 1987년에 설립되었음.

- o 監督廳長官(Commissioner)에 의해 관리되며, 직접적으로는 재무성 출납국장이 책임을 짐.
- o ISC의 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감독을 포함함.

□ 보험회사의 감독방법으로서 시장에 기초한 健全性 接近方法(market-based prudential approach)이 사용됨.

- o 이 방법은 건전성 및 다른 공공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o 또한, 보험자에게 적절한 위험관리 정책과 내부통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자산의 건전한 관리를 중요한 책임으로 하고 있음.

- ☐ 감독관은 생·손보사에 대한 改善措置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o 여기에는 경영의 감독 및 교체가 포함됨.
 - o 만약 清算을 위해 생명보험회사 強制基金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권이 있음.
- ☐ 생명보험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있음.
 - o 감독관의 접근방법은 보험회사에 의해 제출된 금융 및 통계적 결과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 ☐ 손해보험에 관하여, 감독접근방법은 지급여력 및 장기적인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 o 그렇지 않다면 自律監督(self-regulation)에 의존하여 최소한도로 규정을 제한하며, ICA(The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가 자율감독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2) 個人健康保險

- ☐ 주된 감독관은 후생복지부장관(The Minister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임.
 - o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dministration Council은 업계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기구로서 재보험체제를 감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 競爭政策 및 制度

1) 進入障壁

가) 生命保險

□ 생보시장의 진입은 Life Insurance Act 1995에 따라 등록된 회사로 제한됨.

- 회사는 동 법률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監督官은 의무수행 및 감독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회사의 능력 및 타사업에 대한 영향을 조사함.
- 감독관은 1,000만\$ 이하의 자본을 가진 회사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資產價值(보험계약자의 자산 이외)가 부채보다 500만\$ 이상 많아야 함.

□ The Life Insurance Act 1995에는 호주에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지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이에 따라 외국 생명보험회사는 호주시장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호주子會社를 설립하여야 함.
- 이의 근본적 이유는 생명보험회사의 법정기금에 적용되는 支給餘力 및 資本適正性 규정을 통하여 호주 보험계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임.

2) 損害保險

□ The Insurance Act 1973은 특정한 금융요건과 로이즈 언더라이터에 부합되는 인가된 회사에 한해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감독관은 회사가 자본 또는 자산 요건 등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인가해 줄 수 있음.

□ 外國支店은 호주 거주인이 대리인으로서 임명된다면 손해보험사업을 영

위할 수 있음.

-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外國投資許可를 받아야 함.
 - o 그러나, 손해보험사업의 설립을 위한 외국투자허가는 오직 초기 투자가 1,000만\$ 이상일 경우에만 요구되어짐.

3) 個人健康保險

- 향후 건강보험자는 최소한 100만\$의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o 외국 회사는 국내 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2) 退出障壁

가) 生命保險

- 생보사등록을 철회하기 위해 감독관은 회사가 準備金負債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 o 실질적으로 회사는 산업에서 퇴출하기 전에 현재의 사업을 다른 회사에 移轉시켜야 하며, 특정 보험종목에서 철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함.
 - o The Life Insurance Act 1995는 생보사의 이전·합병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移轉의 합의조건으로 法院의 確約을 요건으로 포함함.

나) 損害保險

- 손보사업의 철수를 위해서, 감독관은 보험자가 호주에서 수행되는 보험사업의 부채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o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 보험자는 그들의 準備金負債를 清算하든지 또는 그들의 부채를 다른 보험자에게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o The Life Insurance Act 1995와는 달리 The Insurance Act 1973은 다른 보험자에게 사업을 이전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감독관은 준비금 부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관여함.

3) 價格統制

가)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감독제도는 保險商品의 가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 o 그러나, 價格算定에 감독비용과 생명보험증권의 공개문서(disclosure document)를 확인하기 위한 수수료 요건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 間接的인 影響이 있음.

나) 個人健康保險

- ☐ 후생복지부장관은 地域料率을 무시하는 가격변화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o 보험료 인상은 장관, 재무성 출납국장 및 총리에 의해 세밀히 검토됨.

4) 商品統制

가)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 ☐ 생명보험사업의 일반적인 종류에 부합되는 신상품 및 혁신적인 상품의 도입에 대한 어떠한 障礙要因도 없음.

- o 감독관에게 그 사업이 생명보험사업임을 밝힐 권한이 있음.
- The Insurance Act 1973에서 보험사업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며, 손해보험자에게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제공하도록 허용함.
- o 그러나, 강제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일부 州 및 地方政府에 의한 독점을 허용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
- o 이러한 독점제도는 競爭原則合意(Competition Principles Agreement)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이 합의는 독점의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은 경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임.

나) 個人健康保險

- 모든 상품은 지역요율체계내에서 적합하여야 함.
- o 즉, 보험자는 연령, 성별 또는 건강상태에 기초하여 차별화할 수 없음.

5) 마케팅과 販賣채널의 統制

가)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 The Insurance Contracts Act 1984는 생명보험자와 손해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공함.
- o 동 법률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업계는 自律監督的인 行動規範(self-regulatory Code of Practice)을 개발하여 왔음.
- o 生命保險 行動規範(The Life Insurance Code of Practice)은 생명보험회사 및 생명보험 브로커에 적용됨.
- The Insurance(Agents and Brokers) Act 1984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산

업의 중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그들에게 특정 책임을 부여함.

- 현재의 ISC 告知制度는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고지서류의 생산을 요구함.
 - o 동 제도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상품의 주요 특성을 기술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o 정보는 유사한 상품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 銀行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음.

나) 個人健康保險

- 地域料率原則(The Community Rating Principle)은 모든 상품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The National Health Act 1953, Health Insurance Act 1973 및 Banking Act 1959는 은행이 건강보험자로 등록하거나 건강보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
 - o 그러나, 은행은 개인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관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음.

6) 支給餘力 및 投資規程

가)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 생명보험회사는 The Independent Life Insurance Actuarial Board에 의해

결정된 지급여력 및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o 일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 법정기금의 투자는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해 제한받지 않음.
- o 그러나, 생명보험자는 감독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 關係會社の 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수 없음.

□ 손해보험회사의 支給餘力은 부채에 대한 자산의 초과분으로서 표현됨.

- o 호주의 주식회사는 總資産이 총부채를 200만\$, 보험료 수입의 20% 또는 클레임 준비금의 15% 이상 중 가장 큰 수치를 초과하여야 함.
- o 또한, 호주에서 영업하는 외국지점을 포함한 모든 회사는 호주에서의 부채, 보험료 수입 또는 클레임 준비금에 관하여 유사한 테스트를 적용하여야 함.
- o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자의 투자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지 않음.
- o 법인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지 않지만 감독관에 의해 인가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산은 지급능력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나) 年金 및 個人健康保險

□ 연금기금은 The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을 따름.

- o SIS의 운영 및 건전성 요건의 준수는 연금법인체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임.

□ 지급능력 및 투자규정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7) 保險者間 協定

□ 보험자는 호주의 國家競爭法인 The 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목적 또는 영향을 가진 협정을 금지함.

- o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함.
- o 가격을 권고할 목적이나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고정시키는 협정은 금지되나, 일부 연합 벤처 및 집단적인 구매그룹은 제외됨.

□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은 위에서 언급한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일부 협정에 대해서는 法的節次를 면제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음.

- o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공공이익이 반경쟁적 장애요인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ACCC가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음.

(박중영 선임연구원)

판매채널과 事業費率과의 關係分析 : 美國의 損害保險種目を 中心으로*

미국내 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 감소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직판보험사가 독립대리점보험사보다 사업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예상되지만, 본 논문에 의하면 보험종목별 회귀분석 결과 6개 종목 중 2개 종목만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판매채널간 事業費率 推移>

- 미국의 손해보험 판매채널은 直販制度和 獨立代理店制度로 대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비 측면에서 직판이 독립대리점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o 직판은 專屬募集人(exclusive agent), 職級販賣(salaried employee), 대량 판매보험자(mass merchandiser insurers)를 통한 판매를 포괄하며, 독립대리점은 브로커와 독립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임.
 - o 양 판매채널간 차이는 고객에 관한 만기표 소유권 여부로 독립대리점제도 하에서는 고객리스트에 대한 만기표 소유권을 모집인이 갖기 때문에 보험사는 모집인의 허락없이 직접 고객과 접촉할 수 없음.
- 先行研究에서는 독립대리점제도 하에서의 사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과거 20년 동안 크게 감소하고 있음(1978년 62.5% → 1994년 52.1%).
 - o 특히 個人物件保險에서의 시장점유율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 Expense Ratios Across Insurance Distribution Systems: An Analysis By Line of Busines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view』, Vol. 2, 1999 winter.

있는데, 1978년 45.4%에서 1994년에는 33.2%로 12.2%p 감소하였음.

- o 이에 비해 企業物件保險은 동 기간 동안 72.3%에서 71.8%로 0.5%p 감소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 감소는 상당부분이 높은 募集費用(언더라이팅 비용의 60%를 모집비용이 차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o 그러나, 기업물건보험 부문에서 독립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독립대리점이 비용측면에서 불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
- o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모든 보험종목에서 직판보험사의 사업비율이 독립대리점보험사보다 낮은지 여부와 각 보험종목별로 어떤 판매채널이 우위에 있는지를 檢證하고자 하였음.

<추정모델>

□ 회귀분석은 OLS 기법을 활용하였음.

□ 從屬變數는 사업비율(언더라이팅 관련 비용/ 수입보험료)이며 獨立變數는 다음과 같음.

- o 사업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임.

- ・ 개인물건보험 : 자동차상해보험, 자동차책임보험, 주택종합보험
- ・ 기업물건보험 : 일반배상보험, 勤災保險,

다중위험배상보험(commercial multiperil insurance)

- o 수입보험료 이외에 보험사의 소유형태(주식회사 vs 상호회사), 再保險

出再 여부, 보험회사규모,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그룹계열사 여부, 특정 보험종목의 特化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음.

<推定結果>

① 全種目(개인물건보험 + 기업물건보험)을 대상으로 한 경우

- ☐ 독립대리점보험사¹⁾의 사업비율이 직판보험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함.
 - o 주식회사 하에서의 사업비율이 상호회사 보다 낮음.
 - o 규모가 큰 보험사일수록 사업비율이 낮음.
 - o 그룹 계열사일수록 사업비율이 높음.
 - o 근재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에 특화한 보험사일수록 사업비가 낮음.

② 개인물건보험을 대상으로 한 경우

- ☐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동차상해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독립대리점보험사와 직판보험사간 사업비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주택종합보험의 경우는 직판보험사의 사업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③ 기업물건보험을 대상으로 한 경우

- ☐ 일반배상보험과 勤災保險의 경우 독립대리점보험사와 직판보험사간 사업

1) 여기에서 독립대리점보험사란 독립대리점, 보험중개인과 같은 모집조직을 갖는 회사를 말함.

비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중위험배상보험의 경우는 직판보험사의 사업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結論>

- 총 6개의 보험종목 중 2개 보험종목(가계종합보험, 다중위험배상보험)에서만 직판보험사가 독립대리점보험사보다 사업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保險種目에서 사업비율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동차보험과 근재보험의 경우 규제가 가장 심한 종목이고, 감독당국의 관심이 독립대리점보험사의 사업비율 감소를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됨.
- 따라서 보험종목에 따라 판매채널간 사업비율의 우위가 달리 나타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이경희 연구원)